

# 共同體의 論理와 倫理

이 홍 구\*

〈목

차〉

- |                   |                   |
|-------------------|-------------------|
| 1. 머리말            | 4. 한국적 사회계약의 기본문제 |
| 2. 계약공동체적 접근의 필요성 | 5. 맷음말            |
| 3. 한국적 사회계약의 의미   |                   |

## 1. 머리말

오늘날 우리는 역사의 전환기에 살고 있다. 바야흐로 우리는 “세계화”와 더불어 “지방화”的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세계화의 추세는 UR의 타결과 WTO체제의 수립, UN의 활성화, APEC회담 개최 등을 계기로 널리 확산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세계적으로 또 지역적으로 경제적 상호협력을 비롯한 전지구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공동노력이 증대되고 있다. 한편, 국내적으로 보면, 내년 6월 27일 지방자치선거를 하나의 중요한 시점으로 하여 이른바 지방화시대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에서 지방으로 간다’는 것과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간다’는 것은 일견 상반되는 경향으로 보인다. 즉, 하나는 보다 넓은 곳으로 가는 것이고 하나는 어떤 면에서 보다 좁은 뿌리를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계화와 지방화는 동시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지방화와 세계화의 시대가 열리는 그 사이에 우리는 민족적으로 통일을 이루기 위한 노력도 함께 경주해야 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것은

---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공동체의 단위는 어떻게 되며, 그러한 단위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러한 문제들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혼자 살지 않고 모여서 사는 이상 당연스럽게 제기될 수 있다. 필자는 공동체라는 단어를 선호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큰 의미를 둔다. 공동체란 단어는 우리가 함께 모여 같은 목적을 가지고 상당히 평화롭게 살아간다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 1989년 제안된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이라는 명칭은 공동체라는 단어에 강조를 두고 있고, 올해 8월 15일에도 우리 통일방안을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으로 재확인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원래 ‘공동체’라는 말은 종교단체를 비롯해 여러 집단, 여러 사람들 사이에 널리 쓰이는 용어이다. 그런데, 이 공동체란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 조금이라도 깊이 생각해 보면, 자연히 개인이란 무엇이고 가족이란 무엇인가, 또, 집단이란 무엇이며, 사회란 무엇이고, 국가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혈연이라든가 지연이라든가 학연이라든가 이런 것이 공동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공동체의 논리와 윤리를 논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물음들에 대해 일종의 의미 있는 해답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논리와 윤리를 분석상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유용하지만, 사실 공동체는 논리와 윤리를 다 필요로 한다. 즉, 인간이 만든 어떤 집단을 영위해 나가려고 할 때, 그것이 왜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야만 하는가에 대한 정연한 논리가 없이 모인 것이라면 참으로 불안정한 것이다. 반면에 또, 윤리가 뒷받침되지 않는 논리만으로는 결코 공동체를 온전하게 운영해 나갈 수가 없다. 나아가 논리가 없는 윤리가 얼마나 허망한 지는 많은 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공동체를 지탱하는 논리와 윤리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들은 언제나 연계시켜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분석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역시 일단 따로 고찰할 필요도 있다.

공동체에 대해 논할 때 그것은 국가보다는 사회를 중심으로 논의

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가 국가보다 훨씬 기초적인 조직이라는 것은 이에 관한 상당히 복잡하고 오래된 정치 철학적 논쟁이 있으나 어떻게 보면 대단히 당연한 전제라 할 수 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사적 전환기의 주요한 특징으로서, 경제가 정치, 군사와 같은 다른 영역에 비해 이전보다 훨씬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 외에도 종종 거론되는 것이 바로 ‘국가’라는 조직의 중요성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현상이다. 그런데, 국가가 약화되고 있다라든지 지방정부의 기능이나 초지역적인 기구의 활동이 강화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느 곳에서나 사람들이 사는 사회가 약화 또는 해체되고 있다는 식의 주장을 할 수는 없다. 사회는 사람들이 모여 상호작용을 하는 바로 그 단위, 즉 가장 기본적인 인간생활의 조직이기 때문이다.

## 2. 계약공동체적 접근의 필요성

일반적으로 공동체 하면 “운명공동체”를 떠올리게 된다. 그것은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운명적으로 보다 정확하게는 숙명적으로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점에서, 사람들에게 쉽고도 강렬하게 연상되는 표상인 것이다. 이러한 운명공동체로서 가장 작은 단위는 대표적으로 ‘가족’을 들 수 있다. 우리가 부모가 되거나 자식이 되는 것은 사실 선택이 아니라 숙명인 것이다. 이러한 숙명적인 공동체가 가장 강력한 응집력과 집결력을 갖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이러한 공동체의 단위가 점점 커져서 민족이 될 때 “우리는 한 민족이다”라는 일체감이 생겨나는 것도 역시 상당히 운명적이고 숙명적인 측면이 있다. 우리 배달민족은 이 한반도에서 지난 몇 천년동안 함께 살아왔다. 이로 말미암은 숙명적인 또 운명적인 공동체로서의 측면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은 바로, 이러한 운명공동체가 가진 어떤 숙명적인 결합의 힘이 점점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는 것이

다. 현재의 전환기는 “이익의 다원화”, 또 그 이익의 다원화로 초래되는 “갈등의 다원화”로 특징지울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운명공동체의 상징이나 이에 연관된 신화를 가지고 공동체를 운영해 나가는 데에는 대단히 커다란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 예컨대, 최근의 한-약사분쟁이나 노사갈등에 대해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다’라는 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별 효력이 없을 것이다. 또, 오랜만에 개최된 남북회담에서나 이산가족이 재회할 때 순간적인 홍분과 감격이 넘치긴 하지만, “남북관계”를 이러한 운명공동체의 신화를 가지고 풀기에는 대단히 미흡하다는 점을 역력히 알 수 있다. 한마디로, 우리가 공동체 특히 민족공동체를 논할 때 그 운명공동체적인 신화나 상징에 의거해 다원화된 갈등이나 이익구조를 조정하는 것은 너무나 미흡하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 공동체의 기초가 미흡해지는 것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적극적인 행위나 규범에 대해서가 아니라 어떤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공동체적 상징이 강화되는 예가 있다. 즉, 어떤 것을 추진하자는 긍정적인 것보다 무엇에 반대하기 위한 부정적인(negative) 목적을 위해 공동체가 하나의 목적을 가질 수 있다. 대학생들이 자주 사용하는 용어로서 ‘반제국주의’나 ‘반제’, ‘반독재’와 같은 구호처럼 어떤 것을 부정하거나 거기에 반대한다는 뜻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것이 공동체의 윤리를 형성하는 것과 비슷한 환상을 가져 올 때가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은 이익의 갈등이 그다지 크지 않은 상황에서나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다원화된 이익갈등으로 특징지워지는 현재의 전환기에서, 운명공동체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우리공동체를 온전히 유지하기가 어렵고, 이제 한국적 공동체도 계약공동체적인 성격이 무엇인가 또 한국에서 사회계약(social contract)을 어떤 측면으로 파악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된다.

우연인지도 모르나, 지난날 그토록 민주화를 갈망해온 우리 사회에서 사회계약이란 용어가 생소하게 느껴지는 것은 역설적이다. 민

주화과정에서 민주주의에 관련된 다양한 용어나 개념, 이론이 많이 수입되어 활발히 논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사회계약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토론 속에서나 이론 속에서 거의 논해본 일이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상당히 흥미로운 현상이다. 근대 민주주의에 관한 주요한 서구이론을 밑받침했던 루소나 로크의 이론이 일반적으로 “사회계약의 이론”이라 불리는데, 바로 그런 서구 민주주의이론의 상당 부분을 수용한 우리 나라에서 정작 사회계약론에 관한 토론이나 논쟁은 거의 없었다는 것은 주목할만한 현상이다. 본고에서는 바로 이 “계약”이라는 문제를 오늘날의 한국이라는 상황에 비추어 중심적으로 논하고자 한다.

### 3. 한국적 사회계약의 의미

계약이라는 것은 “합의”(consensus)를 기초로 한다. 합의를 “많은” 사람이 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중요한 요소라는 것은 익히 잘 아는 사실이다. 합의를 기초로 계약이 성립되는 것과 아울러 계약을 통해 계약당사자의 “권리”가 확인될 수 있다. 권리가 확인될 뿐만 아니라 계약을 통해 계약당사자의 “의무”가 정확히 규정된다. 동시에 이런 권리나 의무가 어떻게 보장되고 어떻게 집행될 것인가에 대한 “절차”도 계약에 포함된다. 이러한 기초적 개념을 바탕으로 사람들 사이에 어떤 목표가 있을 때 우선순위를 정할 수가 있다.

사회계약론은 18세기 서양정치사상의 주류를 이루었던 것으로 루소, 로크 등의 대표적인 논자 외에도, 계약론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사실상 계약론적 측면이 놓후했던 흄 역시 계약에 대해 많은 논의를 전개했다. 그런데 18세기의 고전적 계약론은 여러 한계를 지니고 있다. 특히 이들 고전적 계약론자들의 논의가 과연 현대에 적합한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예컨대, 고전적 계약론자들 중 상당수가 국가나 사회를 생동하는 생물체로 보기보다는 기계적인 조직으로 보았고, 또 모든 것을 가능한 한 법이라는 체계로 정리하고자 했으며, 기본적인 원리나 가치를

경험적인 토대보다는 선형적으로 터득할 수 있는 것으로 다루었다. 이러한 측면들은 고전적 사회계약론의 주된 한계로 많이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본고에서 관심을 갖는 것은 고전적 사회계약론의 장단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운명공동체적 신화에 의존하지 않고, ‘근대적’ 방법으로서 국민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이다. 그리고 공동체를 밑받침하는 것이 국민적 합의라면 그것은 어떤 생리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러나 계약공동체의 기본원리를 찾아내려는 것이 결코 운명공동체적인 측면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국민적 합의를 유도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공동체를 운영하는 데에서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운명이라든가 신화, 특히 우리가 함께 지닌 꿈을 논하지 않고서는 온전히 공동체를 이끌어 나갈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운명공동체적인 요소는 계약공동체를 운영하는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근대사회에서는 그러한 요소가 계약공동체를 영위하는 데 충분조건은 될 수 없다. 따라서, “계약공동체의 요소가 어떤 것들인가”라는 것을 고찰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기본문제에 대한 광범위한 합의를 의미하는 “국민적 합의”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이 가운데서도 특히 권리나 의무에 대한 합의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의 세 가지 항목에 대해 국민들 사이에 기본적인 합의가 존재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첫째, 민주적 참여(democratic participation)의 문제로서, 참여를 하지 않는 사람이 계약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참여하지 않은 사람과 계약을 맺는 것은 그 자체가 계약을 무효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사회정의(social justice)의 문제로서, 만약 어떤 공동체에서 전혀 정의가 실현되고 있지 않다라고 모두가 생각하게 되면 그 공동체는 더이상 공동체로서 존속할 수 없을 것이다. 셋째, 사회복지(social welfare)의 문제로서, 인간은 인간으로서 지니고 있는 특수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복지의 문제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공동체도 존재할 수 없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이상의 참여, 정의, 복지, 이 세 가지가 바로 가장 기본적인 합의를 필요로 하는 문제이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문제가 서로 복합이 될 때에는 참으로 어려운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예컨대, 국민적 합의는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의 다수결을 뜻하는가. 국민적 합의는 언제나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시하는가. 국민적 합의란 보편성에 의거한 것인가 아니면 정당성에 근거한 것인가. 민주적 절차는 사회정의와 복지를 보장하는가. 사회정의가 적절한 복지수준도 보장하는가. 이러한 다양하고도 매우 복잡한 측면을 지닌 문제가 위의 세 가지 기본 문제에 대한 합의의 도출에 모두 관련되어 있다.

앞에서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사회계약을 통해 각자의 권리와 의무가 정의되는데, 여기서 핵심적인 문제는 누구와 하는 계약이냐 하는 점이다. 사회계약에는 두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국민과 같은 사회의 구성원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자신과 나머지 다른 구성원 사이의 계약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자신과의 계약이다. 전자를 문서화한 것으로 대표적인 것이 바로 헌법이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자신과의 계약이라 할 수 있다. 다른 사람과의 계약에서 보이는 헌법적 측면은 공동체의 논리 문제인데 비해, 공동체의 윤리라는 문제는 사실상 가치관의 문제이고 이것은 원천적으로 각 개인의 문제이다. 따라서 집단적인 윤리적 결정이란 것은 그 자체가 실재하는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궁극적으로 윤리적 결정이 각자가 하는 것이라면, 이 권리와 의무에 대한 계약도 실제로는 자기자신과의 계약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기자신과의 계약에서 ‘내 권리가 무엇이다’라는 것에 합의하고 동시에 ‘내 의무가 무엇이다’라고 하는 데에도 합의하는 것이 사회계약의 중요한 부분이 된다. 루소의 일반의지(general will)이란 바로 이러한 것을 의미한다. 물론 일반의지가 일반성 때문에 효력을 지니는 것인가 아니면 그 도덕성 때문에 정당화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그것은 계약의 논리성과 윤리성을 동시에 강조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논의에 비추어 볼 때, 지난날 우리 사회의 민주화 과정에서는 우리의 권리가 무엇인가 하는 데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국민들 사이에 광범한 이해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에 비해, 각자가 지닌 의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논의가 거의 없었다고 판단된다. 그 동안 우리는 사회계약이라는 것을 너무 추상적이고 막연한 것으로 생각해 왔지만, 이것은 우리 사회를 이루고 있는 각 구성원들이 각자의 의무조항에 대해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파생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사회계약 이론이 민주주의 이론의 철학적 토대인데도 불구하고 민주화와 민주주의를 강조해온 우리 사회에서 왜 그것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는가에 대한 하나의 이유로서, “개인의 발견”이라는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계약이란 결국 개인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개인이란 무엇보다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있는 판단을 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스스로 어떤 결정을 내림으로써 그 자신이 스스로 그 계약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할 수 있고, 그 계약으로 인한 의무를 집행할 의사를 가진 그런 개인을 의미한다. 과거 우리 문화는 이러한 이성적인 개인을 발견하지 못한 채 민주화로 나아갔다. 따라서 우리는 개인이 무엇인가, 개인의 권리란 무엇인가 하는 점에 대해 진지하게 충분히 생각해 보지 못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홀륭한 민주적 가치를 강조하는 데 있어서도 개인보다는 집단, 또 이것이 이익집단이든 지역집단이든 계급이든 다른 무엇보다 집단의 명분이나 가치를 내세우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의 시민문화가 가진 한계는 바로 이러한 집단적 가치의 일방적인 강조의一面에서 개인의 권리나 의무를 거의 인정하거나 논의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 4. 한국적 사회계약의 기본문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계약공동체가 올바로 운영되기 위해 반드시 요구되는 광범한 국민적 합의는 참여, 정의, 복지라는 세가

지 기본문제에 관해 도출되어야 한다.

“참여”란 공동체에서 어떤 사회적 선택을 모두 함께 합리적으로 이루기 위해 절대로 필요불가결한 조건이다. 우리의 헌법을 비롯해 그 동안의 민주화 투쟁이 결국은 민주적 참여를 보장받기 위한 것 이었다고 간주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런데 참여한다고 말하는 것은 쉽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참여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문제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 오늘날 한국적 사회계약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가 바로 참여의 형태에 대한 국민적 합의일 것이다.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의회정치를 참여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의회정치의 운용에는 정당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소위 ‘장외’, ‘장내’라는 용어가 나오는 것은 바로 이 참여의 형태에 대한 국민적 합의 또는 사회계약이 없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는 아직도 과제로 남아있다.

참여문제를 논의할 때 엘리트와 대중의 문제가 줄곧 거론된다. 사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사회, 어느 시대에나 그 사회를 이끌어 가는 엘리트구조가 있었다. 중요한 문제는 그러한 엘리트 구조와 국민적 합의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하는 것이다. 지난 2, 30여년 동안 아니 지난 근대사회에 있어 한국에서 여러 가지 헌법적인 해결책이나 정치적인 발전은 엘리트의 협약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많았다. 그런데 이런 협약이 과연 국민적 합의를 반영하는 것이었던가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것은 그 협약이나 합의의 내용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보다 중요하게는 ‘어떤 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국민적 합의라 불릴 수 있는가’라는 절차에 대한 사회계약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심각한 문제로 남아있는 것이다.

앞에서 루소의 일반의지에서 볼 수 있듯이 어떤 면에서 국민적 합의는 그 합의가 지닌 일반성에 근거를 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일반성은 수적으로 말하자면, 국민 대부분이 상당한 정도 함께 공유하고 있는 가치관이나 목표가 있을 때 확보되는 것이다. 그런

데 국민 다수가 공유하는 가치관이나 목표는 대체로 잠재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현재적인 목표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엘리트에 의존하게 되기 마련이다. 그래서 엘리트가 일반의지를 대변할 수 있는, 따라서 국민적 합의를 온전히 표출해낼 수 있는 자격있는 엘리트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완벽한 해답이 존재하지 않는다 해도, 상식적인 차원에서 또 민주주의 이론의 견지에서 제시할 수 있는 기준은 “엘리트, 그 중에서도 특히 정치적 엘리트는 적어도 국민에게 사회적 선택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제시하고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데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계약의 내용을 충실히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현재 우리 의회정치나 정당정치, 기타 많은 사회단체 활동이 국민적 또는 사회적 선택과 잘 연계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 선택인가’를 정확히 밝히지 않는데서 나오는 문제이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상황은 A와 B 사이에 어느 것이 더 나은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이것은 차라리 부차적인 문제이다), 도대체 선택해야 할 대상인 A와 B가 무엇이냐라는 것이다. 여야간에 또 많은 대립적인 사회집단이나 단체들 사이에 벌어지는 다기한 논쟁은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무엇과 무엇 사이에서 선택하자고 말하는 것인지 불분명할 때가 많다. 따라서 엘리트가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사회계약의 일반성을 보증하는데 기여하려면, 선택을 명시하고 그 선택의 내용을 밝히려는 작업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작업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선택이 가져오는 의무조항을 명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어떤 것을 하였으면 좋겠다라는 선택을 제시하면서 그 선택을 실현하기 위한 “대가”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주지하다시피, 우리 사회에서는 이러한 선택의 대가를 분명하게 제시하지 않는 것이 하나의 관행이다. 이런 관행은 사회계약에 들어감으로써 각자가 지니게 되는 의무조항을 모호하게 만듦으로써 사실은 계약 자체를 별 효력이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대가를 제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에

관한 하나의 예로서, 독일통일이 우리 국민들의 통일전망 인식에 끼친 영향을 들 수 있다. 독일통일이 성사되는 것을 눈으로 보기 전까지, 우리 국민에게 통일이 가져오는 대가가 무엇인가, 즉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나 자원을 마련하기 위해 각자가 어느 정도의 희생을 할 각오가 되어있는가라는 문제를 제시하고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 한번쯤 진지하게 고려하도록 촉구하는 엘리트의 노력은 대단히 적었다. 물론 몇몇 일간지나 연구소에서 실시한 국민 여론조사에서 자기 세금이 30%-50%가 더 올라가도 통일을 이루는 것이 좋겠다는 사람이 다수로 확인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다. 그러나 대부분 세금이 100% 올라간다면 그 때에는 좀 곤란하다고 응답한 사람 역시 다수였다는 점 역시 눈여겨봐야 할 것이다. 이러한 통일 문제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의 사회로서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이 수반하는 비용이나 대가가 무엇인가, 또 우리 각자가 부담할 때 어떤 의무조항이 따르는가에 대해 적절히 설명할 수 있는 엘리트가 거의 없을 때, 국민적 합의라는 것은 전혀 계약성을 지니지 못한 공허한 것이다.

이처럼 대가에 대한 선택의 제시나 설명이 모호해지는 이유 중의 하나는 위에서도 잠시 언급한 개인을 소홀히 하는 데 있다. 즉, 대체로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개인의 입이 아니라 집단의 입을 빌어서 즉, 개인보다는 집단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결정되기 때문에 각자에게 돌아가는 대가는 거의 설명되지 않고 간과되는 것이다. 근래에 들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조합주의(corporatism)라든가 협의주의(consociationalism) 같은 이론들이 소개되고 있으나 이러한 이론들은 서구 사회가 “개인의 발견”이라는 단계를 일단 거치면서 개인이 발견된 연후에, 그 개인들이 구성한 집단들이 타협할 수 있는 새로운 협의구조를 어떻게 만들어 낼 수 있는가하는 데 주안점이 있다. 이에 비해 우리 사회는 근본적으로 그러한 개인의 발견이란 단계를 제대로 거쳐오지 못했기 때문에 조합주의나 협의주의를 원용한다 해도 그것이 우리 사회에서 원활히 기능할 수 있는 적절한 사회계약의 형태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큰 것이다. 한마디로, 이 모든 것이 계약문화를 앞으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문제로 집결된다.

사회정의와 사회복지의 문제로서 공익과 사익의 조화는 올바른 계약문화의 수립이라는 위의 문제와도 연관된다. 최근 우리 사회에는 집단이기주의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 시장경제원리로 움직이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자기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문제는 시장원리가 내포하는 재산권(property right)이 절대지상의 권리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것은 우리 헌법에도 명시되어있는데, 재산권과 최소한의 복지에 관한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이 양자가 동시에 사회계약의 기본사항인 것이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우리의 사회계약 속에 명시하고 그것에 대한 모든 국민들의 합의를 끌어내는 것은 간단한 듯하면서도 그 의미가 제대로 이해되지 않거나 실행이 어려운 일이다. 이 문제에 대해 좀더 명확한 선택과 그 선택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국민에게 설명하지 못할 때 정당이나 정치인들이 대단히 공허한 슬로건만 외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과 서구 선진국에서 널리 확산되고 있는 보수주의의 강화나 보수성향의 상승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최근 미국의 의원선거에서 보수성향의 공화당이 압승을 거두고, 일본 역시 보수 양당제로 정착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선진국의 이러한 추세는 우리의 상황과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다. 이른바 국제화, 세계화시대에 선진 제국에서 자국무역의 보호와 경제활성화를 위해 보수성을 강하게 띠어 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한 방향을 강구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사유재산권 보장을 더 강화할 것이냐 사회복지의 수준이나 양을 더 늘릴 것이냐 하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사회계약이 우리의 발전을 가장 잘 보장하면서도 동시에 사회정의와 복지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사회정의를 사회복지 문제와 체계적으로 연관시켜 연구한 롤즈(J. Rawls)의 차등원칙(principle of difference)에 따르면, 모

든 것에 대해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면 그 상황에서 가장 어려운 지경에 있는 사람이 가장 먼저 우선권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원칙과 비슷한 원리는 아마도 한국적인 정서에서 잘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이 원칙이 보다 명확한 프로그램으로 제시된다면 우리 사회의 사회정책과 사회적 선택에서도 하나의 타당한 원칙으로 성립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그리고, 롤즈의 기회균등 원칙도 역시 무난히 받아들여질 수 있는 원칙이라 여겨진다. 이런 원칙들이 모두 수용된다면, 평등주의자의 입장에서는 평등한 사회가 구현될 것이냐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회는 아마도 구현되지 않을 것이다. 대신, 롤즈의 정의원칙에 토대하는 사회는 ‘바람직한 불평등사회’가 될 것이다. 이러한 사회는 의미상 모순적이게 보인다. 그것은 이론적으로나 사상적으로 설명하기가 매우 어렵고, 또 정치적으로도 달성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목표일 수 있다. 여기서 불평등이란 사실 “차이”를 의미한다. 어떤 공동체에서 모두가 동질적이어서 서로 갈등이 없다면, 그것은 사람들이 활동하는 살아있는 공동체라 보기 어려울 것이다.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라는 공동체에서 ‘합의’의 문제가 대두되는 것은 바로 이들이 서로 똑같지 않고 서로 다르기 때문이며,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경구처럼 “차이가 아름다운 것”이다. 이런 견지에서 볼 때 보수나 진보나 하는 잣대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문법이라 하겠다.

## 5. 맷음말

우리 사회에는 상당한 정도의 잠재적인 국민적 합의가 존재한다. 단편적으로 드러날 때도 있지만, 각계 각층에 널리 분산되어 공유되는 상당한 정도의 합의가 잠재적으로 존재한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의 정치문화에서 개인의 발견이 늦어지고 이에 따라 개인에게 어떤 선택을 제시하지도 않았고 이슈를 명료하게 만드는 엘리트나 정치구조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당한 잠재적 합의를 현재적인

사회계약으로 이끌어내는데 전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계약을 바탕으로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다른 민족이나 국가보다 더 빨리 성취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어떤 민족보다 더 풍요롭고 오래된 전통을 가진 운명공동체의 신화를 가진 강한 민족이기 때문에, 이런 운명공동체의 신화에 위에서 상술한 계약공동체적인 내용을 빨리 정돈할 수 있다면 이것이 새로운 공동체의 논리와 윤리로 이어지지 않겠는가라고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

때때로 국민에게 희생을 호소할 때가 있다. 집단이기주의를 규탄할 때도 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주장과 호소는 어떤 논리가 있어야 설득력을 갖는 것이고, 또 각자의 어떤 윤리적 입장에 호소할 수 있어야 현실적인 결과를 내울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호소를 위해 무엇보다 사회계약이 필요하다. 사회계약이란 흡이 지적했듯 이 전국민이 한군데에 모여 투표를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어떤 무형의 계약이다. 풍요로운 운명공동체, 계약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 희생이 요구될 때 여기에는 반드시 희생의 대가가 약속되어야 한다. 그런데 여태껏처럼, 공간적인 차원에서만 이러한 문제를 생각하면, 이것은 해결의 전망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사회적인 사회복지 문제를 공간적인 차원으로만 인식해왔다. 그러나 이 문제는 시간적 차원에서 해결될 수도 있는 것이다. 즉, 오늘의 희생이 내일의 풍요를 가져온다는 약속, 또 그 약속이 어떤 논리성과 윤리성을 내포하고 있고 따라서 그것이 공허한 것이 아니라 실현가능한 것이라고 인식할 때 공동체는 하나의 합의를 가지고 운영될 수 있다. 과거나 지금이나 우리 사회 또는 국가가 미래에 이루게 될 발전의 혜택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하는 문제는 오히려 2차적인 것이다. 그보다는 우리 사회가 안게 될 희생, 그것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가 더 어렵고 더 중요한 문제이다. 만일 혜택을 많이 배분받는 사람이 희생을 덜하거나 희생을 많이 한 사람이 혜택을 덜 받는다는 상황이 초래되면 이는 곧 사회정의가 사라지는 것이고, 사회정의가 소실되면 기본적으로 공동체는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게 된다.

바로 이러한 시각에서 통일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통일로 이어지는 공동체, 통일된 사회, 통일된 공동체가 오늘날 국민들이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것이 어떤 혜택이나 어떤 보상으로 이어지는 것인가에 대해 비교적 명료하고 납득할만한 대안이 제출되고, 거기에 많은 국민들이 찬성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통일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접근으로서 사회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민족공동체의 논리와 윤리를 발전시키기 위해 우리가 지닌 민주공동체, 논리와 윤리를 확실히 해야 할 시점에 이른 것이다. 통일이란 북한의 최고지도자와 하는 기술적인 협상의 문제가 아니며, 통일에 대해 논하는 것은 북한에 있는 2천 2백만 우리 민족구성원들의 복지의 문제를 포함하는 것이다. 과거에 ‘통일 후 어떤 국가체제를 만들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만 지나치게 논쟁이 달구어짐에 따라, 정작 보다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인 민족공동체의 회복이라는 문제에 대한 고민은 분단의 장기화로 인한 문화적 이질성의 증대를 지적하는 것 이상을 넘어서지 못했다. 여기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통일에 대한 하나의 시사를 제공해 줄 것으로 여겨진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핵심적인 특징은,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초점을 두면서, 그것을 만들어 가는 과정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특히, 국가체제를 어떻게 관리하고 두 개의 서로 다른 체제를 어떻게 공동관리할 것인가하는 다소 기술적인 문제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문제에 부차적인 일부분이라 보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운명공동체로서 우리가 지닌 장점을 잘 살리면서 통일을 비롯해 오늘날 우리 사회가 당면한 이슈를 올바로 드러내고 그에 관한 합의를 도출하여 이를 기반으로 공동체 성원 각자가 권리와 의무를 확정하여 실행하는 계약공동체의 논리와 윤리를 온전히 갖추어나가는 것, 이것이 세계사적 전환기에 처한 우리 사회와 국가가 당면한 과제이다.